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56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OOOOO
임직원	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
외부감사인	□□회계법인, ♣♣회계법인

2. 조치내용

○ ㈜OOOOO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감사인지정 2년
- 면직권고 상당(●●●)
- 검찰통보(회사, ○○○, ●●●)

○ 前대표이사 ○○○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前담당임원 ●●●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□□회계법인
- 주의

○ 공인회계사 ☆☆☆
- 주의

○ 공인회계사 ★★★
- 주의

○ ♣♣회계법인
- 주의

○ 공인회계사 ♧♧♧
- 주의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㈜OOOOO >

○ **재고자산 허위계상**

- 회사는 부산물을 정상제품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물량과 단가를 과대계상하고, 제품의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하여,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함

○ **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**

- 회사는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 시, 순실현가능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하고, 이를 가공비가 제외된 원재료 장부가액과 비교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

< □□회계법인 >

○ **재고자산 허위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회사가 재고수불부를 조작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< ♣♣회계법인 >

○ **재고자산 허위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회사가 재고수불부를 조작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